

화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재호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5. 26. 유재호 의원 외 12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5. 31.

다. 상 정 일 자 :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6. 15.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유재호 의원)

가.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 업자 및 종사자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자동차정비업 지원대상에 범위를 정함(안 제4조)
- 자동차정비업의 지원사업의 범위를 열거함(안 제5조)
-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선정 및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박만규 전문위원)

가.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 업자 및 종사자를 돕기 위한 것으로,

나.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정비업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선정 및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정비업계 경영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무봉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5. 2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5. 31.

다. 상 정 일 자 :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6. 15. 수정가결)

2. 제안요지설명(김근범 산림휴양과장)

가. 제안이유

- 무봉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적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자연 휴양림등의 위탁)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 위탁시설현황

(1) 위탁시설명: 무봉산 자연휴양림

(2) 위 치: 화성시 중동 산79번지 일원

(3) 시설연면적: 1,985.28㎡ (건축면적:1,419.03㎡)

○ 위탁사무 : 자연휴양림 시설물의 운영·관리

○ 위탁계획

(1) 위탁기간: 2023. 10. ~ 2025. 10. (계약일로부터 2년)

(2) 수탁자의 자격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3) 선정방법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

(5) 소요예산액 : 277,134천원(2023년도 2회 추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박만규 전문위원)

가. 본 동의안은 무봉산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나. 주요 내용으로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2년동안 민간위탁을 시행할 예정이며, 금년도 필요사업비 약 2억 7천여 만원은 2회 추경시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 무봉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수탁자 선정과정 단계에서 공정성·투명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라. 민간위탁 법적 근거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상 위탁 기간과 동의안의 위탁 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아울러 동의안 계획상 위탁시설이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기에 위탁 시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실한 운영 및 관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이외에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붙임: 수정대비표)

수 정 전 (제출 원안)	수 정 후 (의회 수정가결안)
<p>2. 주요 내용</p> <p>가. (생략)</p> <p>나. 위탁시설현황</p> <p>(1)(2) (생략)</p> <p>(3) <u>시설연면적: 1,985.28m²(건축면적:1,419.03m²)</u></p> <p>다. (생략)</p> <p>라. 위탁계획</p> <p>(1) <u>위탁기간: 2023. 10. ~ 2025. 10.</u> (계약일로부터 2년)</p>	<p>2. 주요 내용</p> <p>가. (생략)</p> <p>나. 위탁시설현황</p> <p>(1)(2) (생략)</p> <p>(3) <u>부지면적: 310,279m²(시설연면적:1,985.28m²)</u></p> <p>다. (생략)</p> <p>라. 위탁계획</p> <p>(1) <u>위탁기간: 2023. 10. ~ 2026. 10.</u> (계약일로부터 3년)</p>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